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19

발의연월일: 2022. 6. 30.

발 의 자:최혜영·김남국·김민석

김용민 · 김한정 · 류호정

박영순 • 박주민 • 송기헌

양향자 • 유기홍 • 유정주

윤미향 • 이형석 • 전해철

정성호 · 정태호 · 최종유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 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, 어린이집의 원장,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 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, 읍·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,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(지역아동센터 제외)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지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

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두텁게 보호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다음 각 호의 장에게 고지한다.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
-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
-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- 4. 읍·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(경계를 같이 하는 읍·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)
- 5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
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
- 7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
- 8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 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 ④ (생략)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 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 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, 「영유아」 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 읍·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 터의 장(경계를 같이 하는 읍.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), 「학 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「아 동복지법 _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「청 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 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장에게 고지한다.

개 정 아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 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 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다음 각 호의 장에게 고지한다.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 린이집의 원장
- 워의 장
-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- 4. 읍·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 센터의 장(경계를 같이 하는 읍·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)
- 5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의2 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
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

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
<u>장</u>
8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
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
<u>설의 장</u>